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안)

의안 번호	75
----------	----

발의년월일 : 2003. 11.
발의자 : 박남오 의원외 10인

1. 주문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2003. 9. 2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반주거지역세분화 내용중

제1종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용적률 150% 이하를 200% 이하로,

제2종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용적률 200% 이하를 250% 이하로,

제3종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용적률 250% 이하를 300% 이하로,

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건의 촉구코자 함.

2. 제안사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매뉴얼대로 따른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불합리성이 예상되는 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촉구코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안)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2003. 9. 20)되었는 바,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용적율 150% 이하”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 용적율 20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등포구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 상태로 개발된 상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에 의한 매뉴얼대로 따른다면 도시발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며,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인 바, 지역적 불균형을 현실성있게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40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건축물의 층수 “4층 이하”는 “5층 이하”로 하고, 용적율 “150% 이하”는 “200% 이하”로 한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12층 이하”는 “15층 이하”로 하고, 용적율 “200% 이하”는 “250% 이하”로 한다.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용적율 “250% 이하”는 “300% 이하”로 한다.

우리 구 의회의 정당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개 구의회가 연대하여 서명운동 전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2003.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